

■ 세계유산협약 전문

1972년 10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7차 유네스코총회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전통적인 쇠퇴 원인뿐만 아니라 한층 심한 손상 또는 파괴를 수반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하고,

어떠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퇴락 또는 소실도 세계 모든 국가유산의 유해한 빈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차원의 보호가 이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보호될 재산이 위치하는 국가의 불충분한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원으로 인하여 종종 불안전하게 됨을 고려하고,

동 기구가 세계의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가에 대하여 필요 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 및 보급할 것을 동 기구의 헌장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진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의 거대 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관계국에 의한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효한 보충적 수단이 될 공동원조를 부여함으로써 동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 하고,

제 16차 총회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 것을 결정한 바,

1972년 11월 16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 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제 2 조

본 협약의 목적상 '자연유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제 3 조

각 협약가입국은 위의 제 1조 및 제 2조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 위치한 여러 유산을 조사 및 파악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제 4 조

각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의 정의에 따라 자국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과하여진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협약가입국은 자국이 갖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한도의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 5 조

각 협약가입국은 자국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

(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직원체제를 갖추어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1 또는 2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다)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한다;

(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마)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 6 조

1.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유산이 영토 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은 해치지 아니한다.

2. 협약가입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제 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해당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요청에 응해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3. 각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다른 협약가입국의 영토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7 조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협약가입국이 행하는 유산의 보존 및 지정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보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체제의 확립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 8 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간 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유네스코 정기총회중에 개최되는 협약가입국 회의에서 선출되는 15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 수는 협약 가입국수가 적어도 40개국을 넘어설 경우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부터 21개국으로 증가한다.
2. 위원국 선출은 전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한다.
3. 이 위원회의 회의에는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센터 (로마센터)의 대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 대표 1인 및 국제자연보호연합의 대표 1인이 협약 협약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협약가입국 정기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도 자문역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에 선출된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3번째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년간).
2.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의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정기총회 회기의 종료일에 끝나고, 또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의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행해진 정기총회의 통상회기의 말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후에 유네스코 총회의장이 행하는 추천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이 위원회의 위원국은 자국의 대표로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제 10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동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 혹은 개인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제 11 조

1. 협약가입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중 동 조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목록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협약가입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록(세계유산목록이라고 칭함)를 작성하여 매년 갱신하여 공포한다. 최신 목록은 적어도 1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해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존재하는 유산의 등록은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유산중 주요 보존작업이 요하고 이 협약에 의거 지원을 요청한 유산을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갱신하고 공포한다. 이 목록에는 보호작업에 요청되는 경비의 견적을 포함시킨다. 이 목록에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에 처한 유산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 위험으로 손괴가 진행됨에 따른 멸실의 위험, 대규모 공적 또는 사적 공사, 급격한 도시 개발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동에 기인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 분쟁의 발생 또는 위험, 재난 및 대변동, 대화재, 지진, 흄사태, 화산 분출, 수위의 변화, 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언제라도 긴급시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대해 즉시 공포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한다.

6. 동 위원회는 제 2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목록 중 어떤 것이든 그 등재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연 및 문화유산이 위치한 협약가입국의 의견을 구한다.

7. 동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 12 조

제 11조의 제 2항 또는 4항에 따라 어느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보다 덜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제 11조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또 기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때, 협약가입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 검토한다. 이 요청은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또는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 또 예비조사의 결과로 좀 더 조사할 가치가 인정될 경우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해 제 1항의 국제적 원조의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취할 행동, 나아가서 적당한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 및 정도를 결정하며, 스스로 관련 정부와 필요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는다.
4. 동 위원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순위의 결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과 자연 환경 또는 세계 모든 국민의 창조성과 역사를 무엇보다도 잘 대표하는 유산에 대해서 국제적 원조를 줄 필요성, 보존작업의 긴급성 및 위협에 처해 있는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능력, 특히 그 국가가 해당 유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한다.
5. 동 위원회는 국제지원이 이루어진 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늘 갱신 공포한다.
6. 동 위원회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금의 자금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자금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있는 국제기관, 국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센터 (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자연보호연합 및 많은 공사 단체 혹은 개인의 지원을 구한다.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 위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행해진다. 동 위원회의 모든 회합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국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문화재보존 및 복원연구센터 (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며 동 위원회의 서류 및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그 결의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 15 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기금, 즉 '세계유산기금' 을 설립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의한 신탁 기금으로 한다.
3. 기금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가) 협약가입국의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기부금;
 - (나) 다음과 같은 기관의 기증, 증여, 유증:
 - (1) 협약가입국 이외의 국가;
 - (2) 유네스코, 유엔의 여타 기구 특히 유엔개발계획, 그 외의 정부간 기구;
 - (3)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및 개인;
 - (다) 기금의 자금으로부터의 이자;

(라) 모금 및 기금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마)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그 외의 모든 자금.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에 대한 그 외의 형식에 위한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 동 위원회는 특정의 사업 용도에 한해서 기부 받을 수가 있다. 단, 그 사업은 동 위원회가 이미 실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가 없다.

제 16 조

1. 협약가입국은 추가된 자발적 후원금에 관계없이 매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유네스코의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협약가입국 회의에서 모든 협약가입국에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정한다. 협약가입국 회의에서의 이 결정에는 과반수 이상의 협약가입국의 출석 및 투표를 요한다. 협약가입국의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기탁함에 있어 제 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 조의 2항의 선언을 행한 협약가입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것으로 언제나 그 선언을 철회할 수가 있다. 단, 선언의 철회는 그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담금이 있을 경우 차기 협약가입국 회의의 기일까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4. 본 조의 2항의 선언을 행한 협약가입국의 분담금은 동 위원회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또 그 금액은 제 항의 규정에 구속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5. 해당년도분 및 전년도(역년에 의함)분의 분담금 또는 자발적 후원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가입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단,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가입국으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국가의 임기는 제 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 때에 종료한다.

제 17 조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를 구할 것을 목적으로 공사 재단 또는 단체의 설치를 고려하고 장려한다.

제 18 조

협약가입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 운동에 대해 원조를 주도록 하고 또 제 15조 제 항에 규정된 기관이 행하는 모금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V.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제 19 조

모든 협약가입국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위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을 보냈을 경우, 자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제 2조에 의거 동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 20 조

제 13조 제 2항, 제 22조 및 제 23조의 (다)규정과 관련, 이 협약 하에서의 국제지원은 제 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유산목록중 어느

한 개의 목록에의 등재가 결정되었거나 등재될 수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에 한해 지원될 수 있다.

제 21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지원을 요청하는 신청 절차 및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보호사업의 계획, 필요한 작업,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능력 즉, 모든 경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신청서는 될 수 있는 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재앙과 그 외의 천재지변으로 요청되는 지원신청은 긴급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해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또 동 위원회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사용할 수가 있는 예비비를 준비한다.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한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를 다음과 같다:

- (가) 제 11조 제 2항 및 제 4항에 의거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서 제기되는 예술적,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나) 승인된 보존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공여;
- (다)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련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 (라) 해당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재 또는 구입할 수가 없는 기재의

공여;

(마) 장기 상환조건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바) 예외적, 특별한 이유의 경우 반환이 필요없는 무상지원금의 공여.

제 23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또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센터에 대해 지원을 줄 수 있다.

제 24 조

대규모의 국제원조는 상세한 학술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가 행해진 후에 주어진다. 이같은 연구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술 회복을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해당국가의 가용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한다.

제 25 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 사업의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국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빼놓고 수혜국가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중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26 조

세계유산위원회와 수혜국가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이 주어지는 사업의 이행 조건에 대해 양자간 협정문을 체결한다. 국제지원을 받은 국가는 합의문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진다.

VI. 교육 사업

제 27 조

1. 협약가입국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교육 및 정보사업을 통해서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및 존중심을 높이도록 힘쓴다.
2. 협약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을 받는 협약가입국은 지원의 대상이 된 유산의 중요성 및 지원의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고

제 29 조

1. 협약가입국은 유네스코의 정기총회가 의결한 기간 및 양식에 따라 동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그 외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관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한 보고와 함께 통보한다.
2. 제 1항의 보고는 세계유산위원회 공람에 부친다.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의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VIII. 최종 조항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이들 다섯 개의 원문은 똑같이 정문으로 한다.

제 31 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각 회원국에 의해 각기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 및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2 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기총회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2.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제 33 조

본 협약은 제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그리고 가입서 제출 후 3개월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34 조

다음의 규정은 헌법상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제도를 취한

협약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본 협약의 규정중 연방 및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권한 아래서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협약가입국의 정부의 의무와 동일하다;

(나) 본 협약의 규정중 연방의 헌법상의 제도에 의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 지워지지 않는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법적 권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이들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해 채택에 관한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제 35 조

1. 협약가입국은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사무 총장에 기탁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수령 후 12개월부터 발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하는 날까지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6 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 32조의 비회원국 및 유엔에 대해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전조의 폐기 통고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37 조

1. 협약은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개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해당 개정은 개정 협약의 협약가입국이 되는 국가에게만 해당된다.
2. 정기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을 경우, 새로운 개정 협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는 한, 새로운

개정 협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구협약을 비준, 수락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다.

제 38 조

본 협약은 유엔 헌장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유엔사무국에 등록한다.

1972년 11월 23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제 17차 정기총회 의장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원본 2통을 작성한다. 원본은 유네스

코에 기탁하도록 하고 그의 인증 등본은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국가 및 유엔에 속달한다.

이상은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국문 - 파일 첨부

영문 - 파일 첨부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세계유산협약이 정한 기준내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기준, 심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무지침

영문 - 파일 첨부

